

제24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
제1차 본회의, 2018.08.27(월)10:00

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전 문 위 원

「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 검토보고

1. 제안자 : 고령군수

2. 제안이유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 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,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장난감도서관의 목적·정의 및 설치장소(안 제1조~제3조)
- 장난감도서관의 기능(안 제4조)
- 회원의 의무 및 연회비·면제 규정(안 제5조~제7조)
- 위탁운영 및 위탁관련 규정(안 제8조~제11조)
- 지도·감독 및 보조금 환수 규정(안 제12조 및 제13조)

4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,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

5. 검토의견

-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
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를 통하여 고령군 영유아 및

어린이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가정의 육아 비용 절감에 기여함으로써 고령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,

○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,

-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
- 안 제3조는 설치장소, 안 제4조와 제5조는 기능과 회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6조와 제7조는 연회비와 연회비 면제를 규정하고
-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탁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
-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지도·감독과 보조금의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.

○ 내용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아동복지법」, 「지방자치법」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므로 「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」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됨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관계 법령 발췌

□ 영유아보육법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~④ <생략>

□ 아동복지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~⑥ <생략>

□ 지방자치법

제144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 <생략>